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 인공지능 및 디지털과 법령데이터의 연계·확산 등을 통해 법제처의 법령정보 서비스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안 등의 심사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3명(4급 1명, 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00. ~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33”을 “234”로 하고, 일반직 계 “232”를 “233”으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을 “11”로 하고, 서기관 “26”을 “25”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9”를 “21”로 하고, 행정사무관 “84”를 “82”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를 “5”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33”을 “234”로 하고, 일반직 계 “232”를 “233”으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을 “11”로 하고, 서기관 “26”을 “25”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0”을 “22”로 하고, 행정사무관 “83”을 “81”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를 “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33</u>	<u>234</u>	+1
·	·	·	
·	·	·	
일반직 계	<u>232</u>	<u>233</u>	+1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10</u>	<u>11</u>	+1
·	·	·	
서기관	<u>26</u>	<u>25</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19</u>	<u>21</u>	+2
·	·	·	
행정사무관	<u>84</u>	<u>82</u>	-2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u>4</u>	<u>5</u>	+1
전산주사보			
·	·	·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33</u>	<u>234</u>	+1
•	•	•	
•	•	•	
일반직 계	<u>232</u>	<u>233</u>	+1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10</u>	<u>11</u>	+1
•	•	•	
서기관	<u>26</u>	<u>25</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20</u>	<u>22</u>	+2
•	•	•	
행정사무관	<u>83</u>	<u>81</u>	-2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u>4</u>	<u>5</u>	+1
전산주사보			
•	•	•	
•	•	•	